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김종양・임이자・김위상

윤영석 • 고동진 • 이헌승

조지연 · 강대식 · 신성범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념상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 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 후속 군수 지원이 제한되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운용유지 단계의 단순부품은 무기체계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발 시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업체주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위와 같은 사유로 첨단부품 자체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시험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여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관리 및 부품 성능시험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국방기술진흥연 구소는 기존의 기능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및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성 문제를 해 소할 수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 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을 "(무기체계 부품개발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각각 "부품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각각 "부품개발"로, "부품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부품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제5항)각 호 외의부분 중 "부품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고, 같은 중 예2호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6항)중 "부품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6항)중 "부품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제7항)중 "부품국산화개발"을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제7항)중 "부품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에 부품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방위산업부품연구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개발·성능시험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 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부품개발
- 2.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 성
- 3. 부품개발 관련 정책 제도 연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 리
- 5. 그 밖에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⑦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연구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⑨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3(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제26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연구 원의 장"으로 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

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위산업부품연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단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
 -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연구원의 설립비용)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호 및 제4호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	제9조(무기체계 부품개발 촉진
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생	<u>등)</u>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	②
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부품 국산화개</u>	<u>부품개발</u>
<u>발</u> 사업자로 선정하여 <u>부품 국</u>	<u>부품개발</u>
<u>산화개발</u> 사업을 실시하게 할	,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	3
라 <u>부품 국산화개발</u> 사업자로	<u>부품개발</u>
선정된 자(이하 " <u>부품국산화개</u>	<u>부품개발</u>
<u>발</u> 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u>부품개발</u>
<u>부품 국산화개발</u> 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	
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	4
라 <u>부품국산화개발</u> 사업자를 선	<u>부품개발</u>
정하는 경우 국방중소 · 벤처기	
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	

다. <신 설>

- ⑤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 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 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 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 ⑥ 방위사업청장·각군 참모총 장·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u>국산화</u>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⑦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 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
업청장이 제9조의2에 따라 설
립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에 부
품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
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u>⑥</u>
<u>부품개</u>
발
1. (현행과 같음)
2. <u>부품개발</u>
<u>⑦</u>
<u>개발</u>
<u>개발</u>
<u>개발</u>
<u>개발</u>
<u>개발</u>

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u> 설>

-----.

제9조의2(방위산업부품연구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개발·성 능시험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 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 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부품개발
- 2.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3. 부품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 5. 그 밖에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⑦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 ⑧ 연구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신 <u>설></u>

- (생 략)
 -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 ② ------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 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 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생략)

<신 설>

로 정한다.

- ⑨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3(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연구원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 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국방기술품 질원의 장, 연구원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연구원의 임원 및 직

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며, 「형법」 및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